

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09. 3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

주요골자

- 가.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수정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.
- 나.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 제·개정 내용과 일치하게 수정(안 제2조).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
-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

- 풍도지구 바다골재채취허가(2010.2.26)에 따른 공유수면 점·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

※ 공유수면 점·사용료 징수 현황

- 골재채취 허가량 : 5,720,000m³(20개업체)
- 공유수면 점·사용료(이자포함) : 19,056,964천원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0. 7. 22 ~ 8. 6(15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5항” 을 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”으로 하고, “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” 을 “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” 을 “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해조장의 설치사업” 을 “해중림(海中林)의 설치사업”으로 하고, “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” 을 “수산종묘의 방류사업”으로 하고, “해양환경의 개선 사업” 을 신설하고, “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” 을 “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호 중 “공유수면관리법 제9조” 를 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소관 실·과		생명산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생명산업과장 정 점 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해양정책담당 김 종 만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재 천 (행정 2328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9조제5항 및 「기르는 어업육성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5항 및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제1항에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수산자원조성사업”이라 함은 「기르는 어업육성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의 설치사업, 바다목장의 설치사업, 해조장의 설치사업,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,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제1항에 해중림(海中林)의 설치사업, 수산종묘의 방류사업, 해양환경의 개선사업,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세입)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9조 수입금 중 바다골재채취 점용료 또는 사용료 2. ~ 3. (생략) 	<p>제3조(세입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2. ~ 3.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

의안
번호 之 0/2

제출년월일 : 2010. 9. 13.
제출자 : 안산시장

개정이유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소관부처명 변경(“보건복지가족부”에서 “여성가족부”로)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명 변경으로 「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 라목의 “보건복지가족부”를 “여성가족부”로 변경함 (안 제2조).
- 나. 부적절한 근거법령 인용에 대한 수정(안 제5조).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등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7조).

개정조례안 : 불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~5조, 제10조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6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0. 7. 27. ~ 2010. 8. 15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

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라목 중 “보건복지가족부령” 을 “여성가족부령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세대원(세대원)” 을 “세대원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” 을 “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조사실시) 제3조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조사로써 갈음한다.

제6조제1항 중 법 제5조에 “의한” 을 “따른” 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시행에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가족여성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가족여성과장 김종수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여성정책담당 이정숙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김경철 (행정 226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모” 또는 “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~ 다. (생략)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<u>보건복지가족부령</u>으로 정하는 자 2. (생략) 3. “모자가족”이란 모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세대원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)인 가족을 말한다. 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</p> <p>----- 여성가족부령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 <삭 제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3조(지원대상자)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으로서, <u>법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</u>.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	<p>제3조(지원대상자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, <u>한부모가족지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5조(조사실시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결정으로써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조사실시) 제3조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조사로써 갈음한다.</p>
<p>제6조(지원의 중지 및 부정수급의 징수) ① 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.</p>	<p>제6조(지원의 중지 및 부정수급의 징수) ① -----</p> <p>----- <u>따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시행규칙) ----- <삭 제> -----</p> <p>-----</p>